#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844

발의연월일: 2025. 3 12.

발 의 자:구자근・박덕흠・박준태

김소희 · 김선교 · 인요한

고동진 • 박성민 • 유상범

김성원 · 최수진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

우리나라의 주요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보유지분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, 그 결과 주요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음.

그런데 미국, 일본, 유럽, 싱가폴 등 주요 국가에서는 차등의결권, 신주인수선택권 등 여러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·운용하 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, 현행법은 그러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적대 적 M&A에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기업의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여 적대적 M&A를 시도하는 자와 경영권 방어를 시도하는 자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(안 제432조의2 및 제432조의3)
  - 1)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 또는 제3자에게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(신주인수선택권)를 부여할 수 있음. 다만,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이 사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음.
  - 2)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주 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행사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바, 이는 회사의 가치를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함.
- 나. 신주인수선택권의 제3자배정과 무상배정(안 제432조의4)
  - 1)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선택권의 의 행사가액은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일의 주식의 실질가액에 미달할 수 없음. 다만,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함.
  - 2)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무상배정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내용, 수, 산정방법 및 효력발생일, 행사기간 및 행사가액등을 정하여야 함.
- 다.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(안 제432조의5)

신주인수선택권은 행사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행사가액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행사하고, 신주인수선택권자는 그 행사가액을 납입

하는 때 신주의 주주가 됨.

- 라. 신주인수선택권의 양도 및 무상소각(안 제432조의6)
  - 1) 신주인수선택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으나, 회사는 이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음.
  - 2)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전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무상으로 신주인수선택권 전부를 소각할 수 있음.
- 마.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(안 제432조의7)

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주인수선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상환조건을 차별할 수 있음.

바. 신주인수선택권의 등기(안 제432조의8)

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등기하여야 하고,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등기하여야함.

- 사. 유지청구권, 신주발행무효의 소(안 제432조의9 및 제432조의10)
  - 1)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, 행사제한 또는 상환하여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그 유지 또는 그로 인한 신주 발행의 유지를 청구할수 있음.
  - 2)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주주, 이사 또는 감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



법률 제 호

#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제417조, 제432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편제4장에 제4절의2(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0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 제4절의2 신주인수선택권

제432조의2(신주인수선택권)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미리 정한 가액(이하 "행사가액"이라 한다)으로 일정한 기간(이하 "행사기간"이라 한다) 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(이하 "신주인수선택권"이라 한다)를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에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이사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.

②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

- 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
- 1.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
- 2.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한도
- 3.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는 뜻
- ③ 회사는 제2항의 이사회 결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회사의 가치를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
- 1. 주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무상으로 부 여할 수 있다는 뜻
- 2.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
- 3.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 거나 행사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뜻
- 4.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는 뜻 ④ 회사는 제2항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그 행사가액을 신주인수선택권 부여일 또는 행사일 주식의 실 질가액이나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.
- ⑤ 회사는 제2항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부여된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을 상환의 효력 발생일의 주식의 실질가액이나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

정할 수 있다.

- ⑥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제4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제432조의3(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) ①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
  - 1.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주주 또는 제3자의 확정에 관한 사항
  - 2.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또는 이를 산정하는 방법
  - 3.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
  - 4.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
  - 5.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해당 주주의 범위
  - 6.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 거나 행사내용을 달리 정한 때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해당 주 주의 범위
  -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사회 결의일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제4호의 행사기간 개시일은 제2항의 공고일부터 2주 후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.
  - ④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은 제1항제4호의 행사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.
- 제432조의4(신주인수선택권의 제3자배정과 무상배정) ① 제432조의2제

- 2항제1호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신주인수선택권 부여일의 주식의 실 질가액에 미달할 수 없다. 다만,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 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43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
- 1.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되는 신주인수선택권의 내용과 수 또는 그 산정방법
- 2. 배정의 효력발생일
- 3.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배정을 받는 주식의 종류
- 4.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가액
- ③ 주주는 제2항제2호의 효력발생일에 신주인수선택권을 가진다.
- ④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2주 전까지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된 신주인수선택권의 내용 및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432조의5(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) ①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그 행사기간 내에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, 이사회가 정한 은행,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그 행사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.
  - ②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제516조의9제4항을 준용하다.

- ③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의 대가로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한 자는 행사일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.
- ④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행사하여 교부받은 신주의 주주는 그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신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⑤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행사된 것으로 본다.
- 제432조의6(신주인수선택권의 양도 및 무상소각) ① 신주인수선택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. 이 경우 양도 승인에 대해서는 제 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를 준용하되,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양도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.
  - ②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개시되기 전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써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신주인수 선택권 전부를 소각할 수 있다.
- 제432조의7(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) ① 회사가 제432조의2제3항제4호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
  - 1.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는 뜻과 그 사유
  - 2. 상환할 신주인수선택권의 범위
  - 3. 상환의 효력발생일

- 4. 상환의 대가로 교부할 신주 또는 금전, 그 밖의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
- 5. 상환에 관하여 주주의 일부를 다른 주주와 달리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해당 주주의 범위
-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제3호의 상환의 효력발생일은 제2항의 공고일부터 2주 후 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상환하는 신주인수선택권은 상환의 효력발생일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.
- ⑤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 대가로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상환을 받는 자는 상환의 효력발생일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.
- ⑥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상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⑦ 상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상환의 효력 발생일이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상환된 것으로 본다.
- 제432조의8(신주인수선택권의 등기) ① 회사는 제432조의2제1항의 이 사회 결의일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신주인수선택권의 등기 를 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

- 2.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
- 3. 신수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
- ③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 주 이내,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.
- 제432조의9(유지청구권)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 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고 행사제한 또는 상환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지 또는 그로 인한 신주발행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.
- 제432조의10(준용규정) ①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를 준용한다.
  - ②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수가 1주에 미달하는 단주인 경우에는 제443조제1항을 준용한다.

제631조제1항제3호 중 "第402條 또는 第424條"를 "제402조, 제424조 또는 제432조의9"로 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第330條(額面未達發行의 制限) 株 第330條(額面未達發行의 制限) --式은 額面未達의 價額으로 發 行하지 못한다. 그러나 第417條 ----- 다만. 제417조. 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432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다. <신 설> 제4절의2 신주인수선택권 <u><신</u> 설> 제432조의2(신주인수선택권)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 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 라 미리 정한 가액(이하 "행사 가액"이라 한다)으로 일정한 기간(이하 "행사기간"이라 한 다) 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 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 리(이하 "신주인수선택권"이라 한다)를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434조에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 의로써 이사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. ②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려 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

-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

  1.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인
  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
  뜻
- 2.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한도
- 3.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 식을 교부할 수 있다는 뜻
- ③ 회사는 제2항의 이사회 결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회사의 가치를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
- 1. 주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 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무상 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뜻
- 2.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
- 3.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 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 지 아니하거나 행사내용을 달 리 정할 수 있다는 뜻

4.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는 뜻

④ 회사는 제2항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그 행사가액을 신주인수선택권 부여일 또는 행사일 주식의 실질가액이나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.

⑤ 회사는 제2항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부여된 신주인수선 택권의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을 상환의 효력발생일의 주식의 실질가액이나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수 있다.

⑥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제4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제432조의3(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) ①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 을 부여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한다.

1.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받을

<신 설>

- 주주 또는 제3자의 확정에 관 한 사항
- 2.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발

   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또는

   이를 산정하는 방법
- 3.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 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
- 4.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
- 5.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 인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 하기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해당 주주의 범위
- 6.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 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 지 아니하거나 행사내용을 달 리 정한 때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해당 주주의 범위
-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사회 결의 비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제4호의 행사기간 개 시일은 제2항의 공고일부터 2 주 후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.
- <u>④</u>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은 제1항제4호의

행사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보 류하여야 한다.

제432조의4(신주인수선택권의 제3자배정과 무상배정) ① 제43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선택권의행사가액은 신주인수선택권 부여일의 주식의 실질가액에 미달할 수 없다. 다만, 제434조에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 제43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
- 1.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되는 신주인수선택권의 내용과 수 또는 그 산정방법
- 2. 배정의 효력발생일
- 3.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배정을 받는 주식의 종류
- 4.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

#### 및 행사가액

- ③ 주주는 제2항제2호의 효력 발생일에 신주인수선택권을 가 진다.
- ④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2주 전까지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된 신주인수선택 권의 내용 및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432조의5(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) ①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그 행사기간 내에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,이사회가 정한 은행,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그행사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한다.
  - ②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려 는 경우에는 제516조의9제4항 을 준용한다.
  - ③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의 대가로 신주를 교부하 는 경우 신주인수선택권을 행 사한 자는 행사일에 신주의 주 주가 된다.
  - ④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

<u><신</u>설>

행사하여 교부받은 신주의 주 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 의에 관하여는 신주의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없다.

⑤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 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선택권 의 행사일이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행사된 것으로 본다.

제432조의6(신주인수선택권의 양 도 및 무상소각) ① 신주인수 선택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 도할 수 있다. 이 경우 양도 승 인에 대해서는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를 준용하되, 회 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양도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.

②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개시되기 전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써 대가를 지급하지 아 니하고 신주인수선택권 전부를 소각할 수 있다.

제432조의7(신주인수선택권의 상 환) ① 회사가 제432조의2제3

항제4호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는 경 우에는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

- 1.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는 뜻과 그 사유
- 2. 상환할 신주인수선택권의 범위
- 3. 상환의 효력발생일
- 4. 상환의 대가로 교부할 신주또는 금전, 그 밖의 재산의구체적인 내용
- 5. 상환에 관하여 주주의 일부 를 다른 주주와 달리 취급하 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 용 및 해당 주주의 범위
-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 항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그 내 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제3호의 상환의 효력 발생일은 제2항의 공고일부터 2주 후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 다.
- ④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상환 하는 신주인수선택권은 상환의 효력발생일에 그 효력을 상실

한다.

- ⑤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 대가로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상환을 받는 자는 상환의 효력발생일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.
- ⑥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상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① 상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상환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면도 말에 상환된 것으로 본다. 제432조의8(신주인수선택권의 등기) ① 회사는 제432조의2제1 항의 이사회 결의일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신주인수선택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인

     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

     수
  - 2.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

<신 설>

- 3. 신수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
- ③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,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하여야 한다.
- 제432조의9(유지청구권)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고 행 사제한 또는 상환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 여 그 행위의 유지 또는 그로 인한 신주발행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.
- 제432조의10(준용규정) ① 신주인 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를 준용한다.
  - ②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 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수가 1주에 미달하는 단주인 경우에는 제443조제1항

第631條(權利行使妨害 等에 關한 贈收賂罪) ① 다음의 事項에 關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財 産上의 利益을 收受, 要求 또는 約束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 한다.

- 1. · 2. (생략)
- 3. <u>第402條 또는 第424條</u>에 定 하는 權利의 行使
- ② (생략)

<u>을 준용한다.</u>
第631條(權利行使妨害 等에 關한
贈收賂罪) ①
<u>.</u>
1.·2. (현행과 같음)
3. <u>제402</u> 조, 제424조 또는 제43
2조의9
② (현행과 같음)